#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1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윤영찬·한준호·홍정민

이용빈 • 양이원영 • 윤준병

민형배 • 변재일 • 강병원

우상호 · 양정숙 · 이광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운영의 정지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 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안전관련 타 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따라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 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4조, 제92조, 제117조 및 제118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 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3.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보고,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전단·제60조제1항 전단·제68조의3제1항 전단·제68조의4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26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77조의3제2항·제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제2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 조제1항·제65조의2제1항·제68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 조를 위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l> <li>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li> </ol>
	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u>경우</u>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
	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u>경우</u>
	3.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
	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
	<u>지된 경우</u>
제34조(준용) ① (생 략)	제34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
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	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	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
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	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
자로등운영자"로 본다.	등운영자"로 보고, 제26조제6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 ② (생 략) <신 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 조·제44조·제51조 및 제69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제28조제1항 전단(제3 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제42조제1항 전단 • 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

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 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 업정지"로 본다.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 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세117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 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 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 조·제44조·제51조 및 제69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제26조제6항(제3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28조제1항 전단(제3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1항 전단・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 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 5. (생략)
-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 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 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 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생략)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 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

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 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 1항 전단·제68조의4제1항 전 <u>단·제76조제1항</u>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 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 5. (현행과 같음)
- 6. 제26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77조 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 ·제94조·제96조 또는 제97 조를 위반한 자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1. (현행과 같음)
-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40조제1항 · 제65조의2 제1항 • 제68조제1항 • 제88조 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68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u>자</u>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